

#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회 부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10. 10 (월) 평창군수(재난안전관리과장)
- 나. 회부일자 : 2005. 10. 25(화)
- 다. 상정일자 : 2005. 10. 25(화) 제12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특위

### **2. 제 안 이 유**

- 가. 태풍·호우 등 직·간접적인 자연현상의 영향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를 위한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3. 주 요 골 자**

-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다.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군·경찰서 과장급이상 공무원, 주민대표(군의원) 또는 재난 방재관련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라.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 위원회는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 전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 인명 피해여부를 결정, 복구계획에 반영 요청
- 마. 인명피해심의위원회 회의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 **4. 검 토 결 과**

- 가.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 지원여부 판단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시행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2004. 7. 26**

**중 앙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정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 정의 해석을 위한 용어 해설

### ○ 우리나라 영토의 범위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미치는 연근해 해상

#### 【제외 예시】

- ◇ 우리나라 선박이 인도양에서 조업중 태풍에 의해 침몰한 경우
- ◇ 자연현상에 의한 비행기 사고

### ○ 본인의 귀책사유 범위

-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란 일반적이므로

- 강풍, 풍랑, 태풍, 호우, 대설, 해일, 파랑에 관한 기상 특보발령 기준에 미달되거나
- 하천인 경우 강우로 인하여 피해지점의 수위가 경계수위 이하인 때

- 경계 수위가 지정되지 않은 하천에서 피해당시의 수위가 최대통수 가능 유량의 1/2미만인 경우
- 12시간 강우량이 80mm 미만인 때
- 시우량이 30mm 이하인 때
-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 3시간 미만 지속되거나, 파고가 3m 미만인 때
-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미달된 경우를 말하나 위의 경우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자연재난 임이 명약관화 할 때에는 이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본다.

-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로서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나 태만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 강우, 강설, 안개 등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선박, 비행기 사고 등 교통관련 피해
- 경찰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안전사고 등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 【피해제외 예시】

-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 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행동하다 피해를 당한 경우 등
- ◇ 행정청 등으로부터 위험지역으로 판단되어 퇴거 또는 대피권고 지시가 있었으나 이를 불응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 ◇ 하천 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자다가 물에 불어난 물에 의해 사망, 실종된 경우
- ◇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입은 피해 등
- ◇ 물에 잠긴 도로나 교량으로 무리하게 차를 몰고 가거나 걸어 가다 급류에 사망, 실종된 경우

## ○ 직·간접적인 자연현상의 범위

- 홍수, 호우, 폭설,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 자연현상이 1차적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통상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간접적인 현황

### 【간접적인 현상으로 발생된 인명피해 예시】

- ◇ 벼락이 나뭇가지를 절단하여 쓰러지는 나뭇가지가 차에 가해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늘어진 송전선에 감전사한 경우

## ○ 결국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이 발생된 경우

- 결국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이 발생된 경우란 복구계획 수립시점에서의 상태를 말하며 실종이란 자연재해에 의해 행방불명되어 복구계획수립 이전에 타인과의 접촉이나 연락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단, 실종의 경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해석이며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위한 해석이 되어서는 안된다.

### 【결국 사망한 경우의 예시】

- ◇ 산사태로 부상하여 흙더미 속에 매몰되었다가 구조작업중 사망한 경우 → 사망
-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자가 치료도중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 사망
- ◇ 하천 급류에 실종되었다가 사체가 발견된 경우 → 사망

## □ 인명피해 처리 세부지침

- 인명피해 보고 : 발생즉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즉보
  - 내부의 통상적 결재과정 생략
  - 보고계통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대한 보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보고와 동시 이행
-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닌 경우일지라도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보고하고, 피해 최종집계까지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판정된 경우 최종 입력
- 외국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통계에는 포함시키나 복구계획 수립에서는 제외
- 피해발생 시도에서는 사망,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 주소지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즉시 FAX로 통보
- 선원인 경우 선주나 선박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 단체장

- 위원 : 10인 범위내에서 시·군·구, 경찰서, 소방서의 과장급이상 공무원과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으로 구성
-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 구성·운영 ✓

### ○ 운영

-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 전(피해원인 종료후 7일이내)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 인명피해여부를 결정, 복구계획에 반영
- 심의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
- 결정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 단, 찬·반위원이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함

### □ 향후 조치계획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시달 : '04. 7월
- 기초자치단체별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04. 8월부터

“2014평창동계올림픽, 우리 함께 달려요”



## 평 창 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 제 목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제정(안)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05.3.22 ~ 4.13(23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평창군보 게재, 군청홈페이지 및 군청·읍면게시판 공고
3. 입법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붙임 게시판 및 군청홈페이지 공고 사진 1부. 끝.

대결 07/13  
지방토목서기 *김태호* 방재관리담당 *장진용* 재난안전관리과  
*김명호* 장직무대리

협조자

시행 재난안전관리과-1090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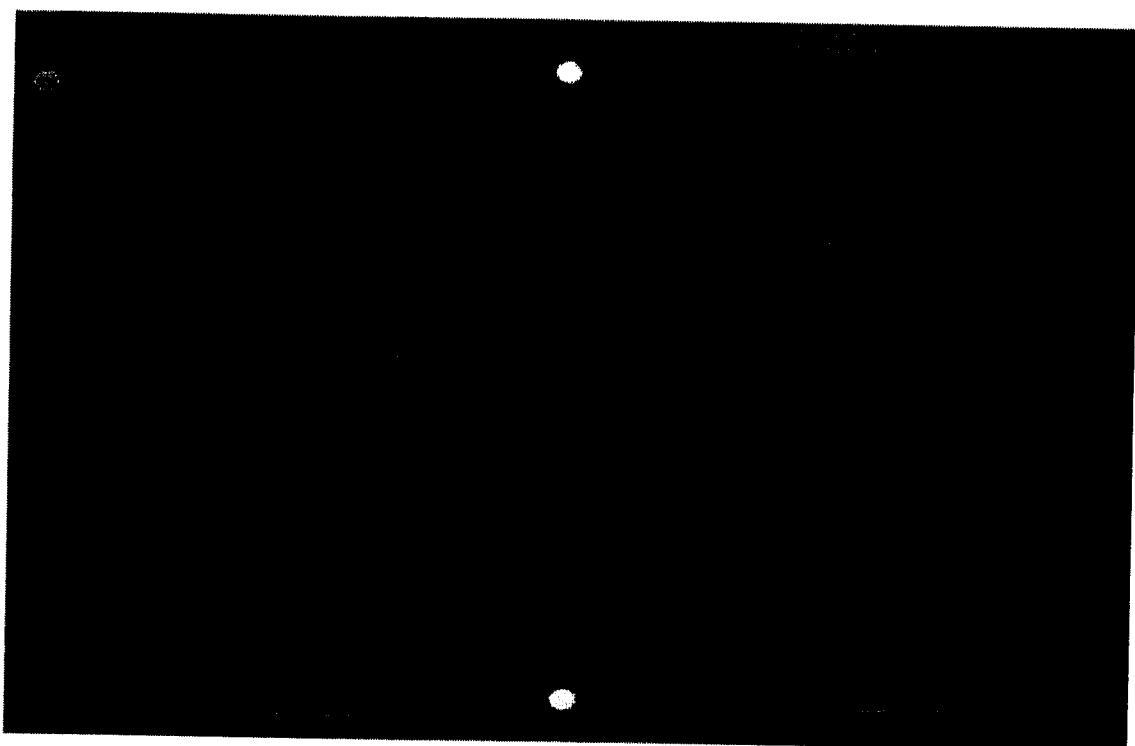
우 232-807 평창군 평창읍 하리 평창군청

/

전화 330-2402 전송

/ cms5020@happy700.go.kr

/ 공개



“HAPPY700평창 우리의 고향”



## 평창군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 제 목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여 평창군 자연 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평창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하니, 읍면장은 조례제정(안)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와 아울러 첨부된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2005.4.13.까지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2. 기획감사실장과 자치행정과장은 본 조례제정(안)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군보게재와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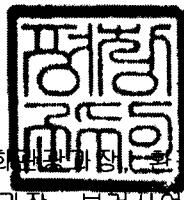
3. 아울러 동 조례제정(안)을 검토하여 추가 및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 2005.4.13.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미제출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내용 :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5.3.22. ~ 4.13.(23일)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군보게시, 군·읍면 게시판 공고
- 공고문안 : 불임

불임 1.입법예고문 1부.

2.조례제정(안) 1부. 끝.

### 평창군수



수신자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복지과장, 임업경영과장, 지역도시과장, 농업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기술개발과장, 보건사업과장, 평창군의회의장, 평창읍장, 미탄면장, 방림면장, 대화면장, 봉평면장, 용평면장, 진부면장, 도암면장

전결 03/17

지방토목서기보

김명호

재난관리팀장

김근우

건설과장

김명호

협조자 지방행정주사  
76 손석호 지방전산주사 신병진

시행 건설과-2963 (2005.03.21.) 접수

우 232-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http://www.happy700.or.kr>

전화 330-2366 전송 033-330-2595 / cms5020@happy700.go.kr /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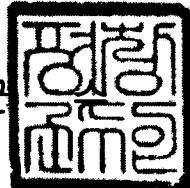
평창군공고 제2005 - 86 호

##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3월 22일

평 창 군



1. 조례명 :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안
2. 제정취지

태풍·집중호우 등 직·간접적인 자연현상의 영향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 복구계획에 반영하고자 평창군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다.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군·경찰서 과장급이상 공무원, 주민대표(군 의원) 또는 재난방재와 관련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으

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라.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위원회는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 전(피해원인 종료후 7일이내) 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 인명 피해여부를 결정, 복구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마. 인명피해심의위원회 회의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시행규칙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

####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평창군청 건설과 (주소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번지 232-700)

라.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건설과 (전화 330-2265, FAX 330-2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184
------	-----

제출년월일 : 2005. 10.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정이유

태풍·호우 등 직·간접적인 자연현상의 영향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를 위한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다.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군·경찰서 과장급이상 공무원, 주민대표(군의원) 또는 재난방재관련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라.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 위원회는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 전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 인명 피해여부를 결정, 복구계획에 반영 요청
- 마. 인명피해심의위원회 회의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05.3.22~4.13)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 라.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평창군조례 제 호

#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를 위한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가목에서 정한 재해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직·간접적인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 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재해
  - 나. 자연현상이 1차적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통상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간접적인 현황
3. “사망·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라 함은 복구계획 수립시점에서의 상태를 말하며 실종이란 자연재해에 의해 행방불명되어 복구계획수립 이전에 타인과의 접촉이나 연락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단, 실종의 경우 법에 의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해석이며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위한 해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본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 가.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
  - 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로서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철저한 부주의나 태만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다. 강우·강설·안개 등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선박·비행기 사고 등 교통관련 피해

라. 경찰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안전사고 등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심의
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원인 규명
3. 피해원인 복구계획 수립 자문
4.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평창경찰서·영월소방서 평창관내 소방파출소의 재난·재해·인명구조업무 소관과장 또는 소장, 대관령기상대장, 재난방재 관련 전문가, 의사, 또는 군의원, 민간단체 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중 결원 발생시 충원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6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①위원회는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 전(피해원인 종료후 7일 이내)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군 자연재난담당은 위원회의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회의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소관 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령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횡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6. “긴급구조”라 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 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함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